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6호 2021. 2. 5(금)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641호 남원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의원발의) ----- 1
- 남원시 조례 제1642호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4
- 남원시 조례 제1643호 남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의원발의) ----- 11
- 남원시 조례 제1644호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원발의) ----- 14
- 남원시 조례 제1645호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의원발의) ----- 16
- 남원시 조례 제1646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 23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666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35
- 남원시 규칙 제667호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38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0-2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43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253호 도로지정공고 ----- 44
- 남원시 공고 제2020-275호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 45
- 남원시 공고 제2020-294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8
- 남원시 공고 제2020-310호 남원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5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641 호

남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육성 및 경비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한다.

제6조(지원경비 관리)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경비 정산) ①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642 호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복지 증진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육·건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지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지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의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 지원

제17조(보호 및 육성)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643 호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남원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644 호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을 “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② (생략)</p> <p>③ <u>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u></p> <p>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 지출,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u>남원시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 지출,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u>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을 준용한다.</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645 호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남원시의원 1명

2.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

3. 관내 경찰서 관계자

4.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2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자문 결과를 위원회 정기 회의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 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646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2조의 제목 “(대부료 등의 감면)”을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를 “영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고시에 지정된 시설

제38조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생략)</p> <p>② <u>영 제13조제3항제20호</u>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13조제3항제24호</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p> <p>④ <u>법 제27조제2항</u>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 ⑥ (생략)</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27조제6항</u>----- -----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율) ① ~ ④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영 제29조제1항제7호</u>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제28조(대부료율)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u>」 제19조제4항 및 제12항----- -----</p>

3. ~ 6. (생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

3. ~ 6.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 토석의 매각대
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
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삭제>

③ 제1항-----

-----.

④ ----- 감정평가법
인등-----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공용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전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

④ 제1항-----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면적)

2. 공용면적의 30퍼센트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사.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사용료의 감면)

① -----
-- 영 제35조제2항-----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분의 30을 감면

<신 설>

<신 설>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

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

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

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

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

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

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고시에 지정된 시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2항-----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규칙 제 666 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감사결과 공개)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감사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

과가 나온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23조 중 “감사정보시스템”을 “공공감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외부 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u>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22조(감사결과 공개) <u>시장은 감사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u></p>	<p>제22조(감사결과 공개) ① <u>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u></p>

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감사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가 나온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23조(감사정보 관리) 시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정보 관리)

----- 공공
감 사 정 보 시 스템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2월 5일

남원시 규칙 제 667 호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남원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남원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p> <p>1. <u>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u></p> <p>2. <u>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u></p>	<p>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 -----.</p> <p>1. <u>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남원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u></p> <p>2. <u>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남원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u></p>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생략)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4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산61-6, 산61-12
 - 나. 사 업 량 : 4,843m²
 - 다. 사업기간 : 2021. 02. ~ 2021. 04. 30.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주*면 *치길 *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1 - 253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0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1-3	남원시 금동 161(전)	박*희	2021-건축과- 신축허가-14	50	1	50	161	50	박*희
2021-4	남원시 금동 161-2(전)	박*희	2021-건축과- 신축허가-16	2	1	2	161-2	2	박*희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열람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사업인 『남원 승화원 증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열람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2월 5

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남원 승화원 증축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광치동 689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4,88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청(여성가족과)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6.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8.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 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	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2필지		9,298	4,885					
1	남원	광치	689	잡	6,286	2,967	남원시				
2	남원	광치	690	잡	3,012	1,918	남원시				

남원시 공고 제2021 - 294 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0.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021. 6. 23.)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따른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안 제2조)

- 민간위원 증원 : 3명 → 5명(+2)
-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 민간위원 5명 중 특정성별 위원의 수가 3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

나.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3조제1항제2호)

3. 입법예고기간 : 2021. 2. 5. ~ 2. 2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감사담당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chjs1218@korea.kr),

전화(063-620-6022), FAX(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2020. 12. 20.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021. 6. 23.)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따른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안 제2조)
- 민간위원 증원 : 3명 → 5명(+2)
 -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 민간위원 5명 중 특정성별 위원의 수가 3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
- 나.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3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 ~ 2021. 2.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 개선안 동의(특정성별의 위원 수 제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제2조(구성) ① ----- ----- -----

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생략)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생략)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생략)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
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
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 (생략)

----- 7명-----

-----.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이 있는 -----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5명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
-----.

1. (현행과 같음)

2.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
금 지급 조례」-----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남원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나. 시행자 : 남원시장
- 다. 사업면적 : 기정) 776,553.9㎡ → 변경) 775,646.1㎡ (감 907.8㎡)
- 라. 사업기간 : 기정) 2013년 ~ 2020년 12월
 변경) 1공구 2013년 ~ 2020년 12월, 2공구 2013년 ~ 2021년 12월
- 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소계	1공구	2공구			
합계	776,553.9	775,646.1	739,920.8	35,725.3	감)907.8	100.0	
산업시설용지	587,700.8	585,569.4	554,385.1	31,184.3	감)2,131.4	75.5	법정 50% 이상
농,수,축,임업 관련제조업	70,019.9	69,841.0	69,841.0	-	감)178.9	9.0	
메카트로닉스 관련 제조업	224,195.8	223,233.0	213,361.1	9,871.9	감)962.8	28.8	
건설자재 관련 제조업	293,485.1	292,495.4	271,183.0	21,312.4	감)989.7	37.7	
지원시설용지	6,052.0	6,030.6	6,030.6	-	감)21.4	0.8	
공공시설용지	6,052.0	6,030.6	6,030.6	-	감)21.4	0.8	
공원	182,801.1	184,046.1	179,505.1	4,541.0	증)1,245.0	23.7	공원녹지율: 8.3% (법정 5~7.5%)
녹지	6,497.0	6,512.6	6,512.6	-	증)15.6	0.8	
도로	56,265.8	57,943.2	53,402.2	4,541.0	증)1,677.4	7.5	법정 8% 이상
주차장	81,521.9	81,140.3	81,140.3	-	감)381.6	10.5	법정 1.0% 이상 (시 조례)
저류지	7,788.0	7,724.9	7,724.9	-	감)63.1	1.0	
폐수종말처리시설	15,191.0	15,124.5	15,124.5	-	감)66.5	1.9	
배수로	14,996.0	14,997.9	14,997.9	-	증)1.9	1.9	

2.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열람공고 기간 내
-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작성 제출)

4.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